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체계정합성을 증진하는 한편,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이 고액인 경우 납부의무자가 지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